

- 적극적 행정지원 및 도민보호를 위한 -

화재피해주민 지원 종합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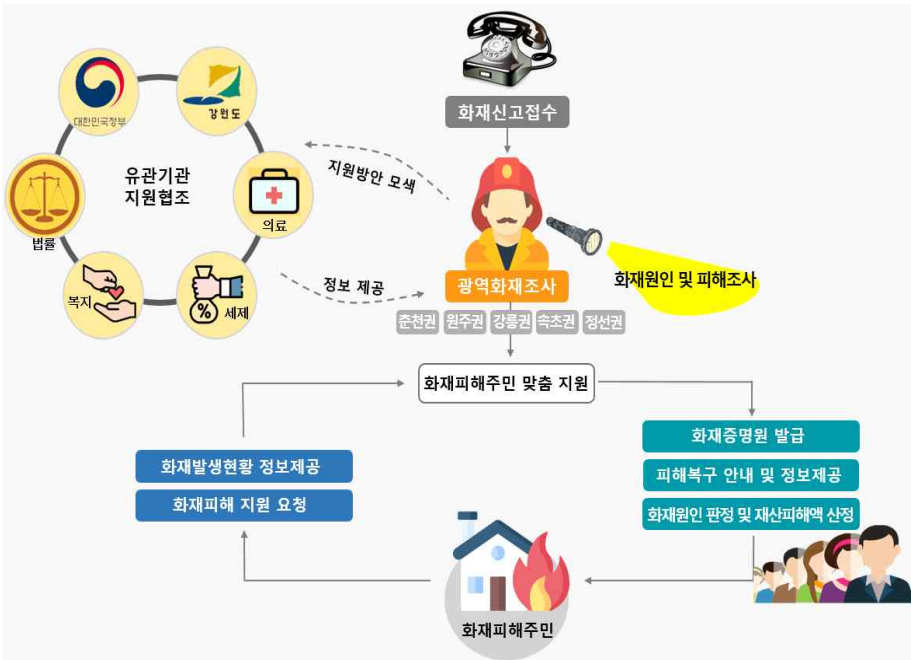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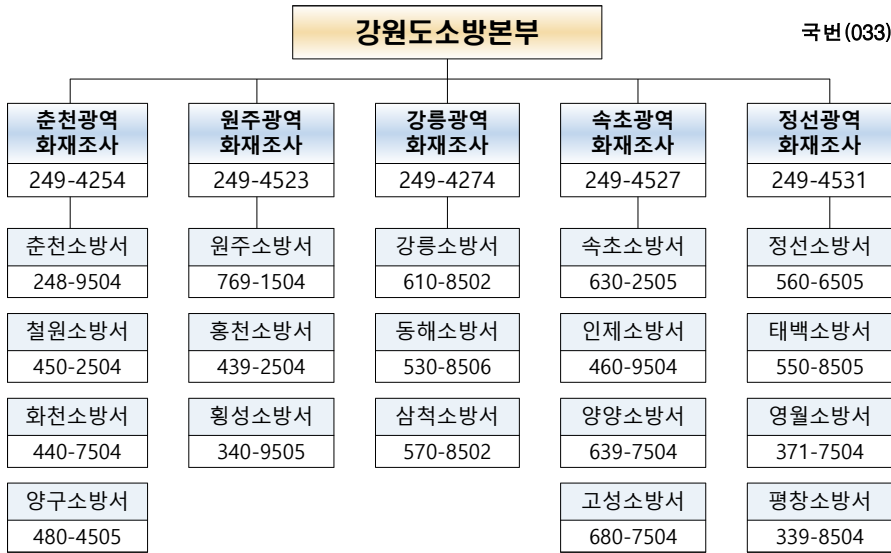


강 원 도
[소방본부]

목 차

- I.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직도 및 체계도 1
- II. 주요 지원사항 2
- III. 세부 지원사항 3
 - ① 강원도소방본부 강원119행복기금 ----- 3
 - ② 시·군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제도 ----- 4
 - ③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 ----- 5
 - ④ 사랑의열매 재난·재해 긴급지원 ----- 6
 - ⑤ 보건복지부 주거급여지원 ----- 7
 - ⑥ 춘천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 ----- 8
 - ⑦ 세제감면 (국세) ----- 9~10
 - ⑧ 세제감면 (지방세) ----- 11
 - ⑨ 화재증명원, 제조물책임(PL)법 ----- 12
- IV. 시·군별 지원사항 13~23

I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직도 및 체계도



II 주요 지원사항

지원분야	취급기관	지원 내용	신청기한	처리 기한
강원119 행복기금	강원도소방본부	강원119행복하우스(주택재건축) Re-START 119(폐기물처리)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6월 내 연내 연내	연 내
화재증명	광역화재조사 소방서	화재증명원 발급 PL법 관련정보제공	민원인 요구시	즉 시
이재민 구 호	보건복지물센터 (129) 시·군·구	구호물품 지급 생계·의료·주거·교육비 지원	민원인 요구시	즉 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랑의열매			
의 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발급	민원인 요구시	즉 시
방화피해자	춘천지방검찰청	생계·장례·의료·간병비 상담·법률·청소·기타 지원	민원인 요구시	즉 시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발생일로부터 3년	7일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사회복지과)	의사상자의 보호 (보상금, 의료, 교육, 취업 장애 등)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60일
국 세	세무서	납기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가산세의 감면 재해손실세액 공제 상속재산재해 손실공제	기한만료 3일전 기한만료 3일전 민원인 요구시 신고기한 신고기한	기한만료일전 10일 즉 시 즉 시 즉 시
지방세	시·군·구 (세무, 세정과)	지방세 감면	민원인 요구시	5일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즉 시
기 타	한국은행 (단순 소수시 모든 은행)	소손화폐 교환	민원인 요구시	즉 시
	경찰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민원인 요구시	즉 시
	읍·면·동 사무소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인 요구시	20일
	관 할 차량등록사무소	차량등록증 재발급	민원인 요구시	즉 시

Ⅲ 세 부 지원사항

1. 강원119행복기금(강원도소방본부)

❖ 강원119행복기금?

- ▶ 2015년 2월부터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기금 [1구좌(1,190원) X 희망구좌수]

① 강원119행복하우스

- 지원사항 : 화재피해 주택 재건축
- 대 상 : 연1가구(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우선 고려
- 지원금액 : 강원119행복기금 40,000천원

② Re-START 119

- 지원사항 : 화재폐기물 처리 및 청소
- 대 상 :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우선 고려
- 지원금액 : 강원119행복기금 10,000천원

③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 지원사항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국립춘천병원 연계)
- 대 상 : 화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관계인
- 지원금액 : 강원119행복기금 2,000천원

☎ 문의 : 강원도소방본부 권역별 광역화재조사팀

2. 긴급복지 지원제도(전국)

①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 곤란

②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월소득 1인기준 137만원, 4인기준 365만원 이하)
- 재 산* : 1억 1,800만원 이하
 -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③ 지원사항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최 대 횟 수	
금 전 · 현 물 지 원	위 기 상 황 주 급 여	생 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만원 (4인기준)	6회
		의 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 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9만원(1인)	12회
		복 지 사 설 이 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53만원(1인)	6회
	부 가 급 여	교 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만원 - 중 352만원 - 고 432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 밖 의 지 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④ 신청방법

- 시(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 기타 증빙자료

3.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전국)

1 지원대상

- 자연·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자의 가족
- 자연·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
-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유실·붕괴·전도 등으로 주거 시설이 상실됐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로 침수·파손된 자

2 지원사항

1 긴급구호세트(세대원당 지급)

구 분	구성물품	수 량	비 고
1 인용	담 요	2	플라폴리스
- 85,000원 상당	구호의류	1	하복, 동복 구분
(남·여 구분)	일용품(세트)	1	세면도구, 내의 등

* 일용품 구성내역

- 수건 2장, 치약 1개, 칫솔 1개, 베개 1개, 반코팅면장갑 1켤레, 내의 2벌, 양말 2켤레, 면도기 2개(남), 생리대 1팩(여), 화장지 1롤, 세면비누 1개, 안대 1개, 귀마개 1쌍

2 비상식량세트(가구당 지급)

구 분	구성물품	수 량	비 고
1 가구용	즉석밥	12	
- 30,000원 상당	즉석짜장, 카레, 사골곰탕	6	레트로트 식품
	참치, 장조림 통조림	각1	통조림 캔
	비타민	1	비타민 정

3 현금성 지원(구호물자 대체)

- 구호물자보다 숙박 및 식사 비용지원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재민

구 분	기준단가	최대지원기준	지급단위
숙 박 비	45,000원/1박	3박(135,000원)	3인 1실
식 비	20,000원/1일	3일(60,000원)	1인당

4 재난심리 회복지원(재난심리상담 활동가 현장 지원)

☎ 문의 : 0331255-9595~8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4. 재난·재해 긴급지원사업(사랑의열매/전국)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월소득 1인기준 182만원, 4인기준 487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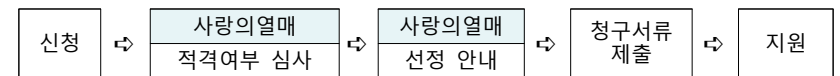
2 지원사항

-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 필요한 생계지원(화재복구지원비, 교육비, 급식비, 주거비 등)
- 재난·재해 피해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수리비 등 지원
- 재난·재해 피해 복구가 요청되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지원
- 재난·재해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의 심리·정서(PTSD) 프로그램 지원

구 분	재난·재해 긴급지원사업		
	화재피해	재난·재해피해	
상세항목		개인	법인·기관·단체·시설
지원규모	- 전 소 : 300만원 이내 - 반 소 : 150만원 이내 - 부분소 : 1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구비서류	1. 화재증명원 2. 증빙사진	1. 사고현황확인서 (주민자치센터/소방서) 2. 증빙사진	일반 배분사업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리

*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사유의 긴급지원은 1년에 1회 제한

4 신청절차



* 필요서류 : 신청기관 접수 공문, 긴급지원산업 신청서, 지원내용별 구비서류

☎ 문의 : 070-4323-17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5. 주거급여 지원(전국)

1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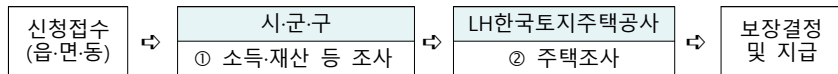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2 지원사항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급

가구 수	임차가구				구분	자가가구		
	지원상한액(월/액)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지원 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지원 주기	3년	5년	7년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3 신청절차



4 신청방법

-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 》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 ② 소득·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⑤ 통장사본

6. 방화피해자 지원(춘천지방검찰청/강원도내)

1 지원대상

- 살인, 상해, 방화 등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가해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2 지원조건

- 가해자로부터 합의 또는 보상이 없는 경우
- 타기관단체, 손해보험, 타법률 등에서 보상이 없는 경우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범죄피해의 확대에 관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지원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경제적 지원	생계비	○ 계좌입금(일시불 또는 분할지원) 정부고시 최저생계비
	학자금	○ 계좌입금 또는 학교로 지급(초·중·고·대 차등) 차등
	장례비	○ 계좌입금 400만원 이내
	의료비	○ 치료비, 심리치료비, 치료부대비용(의료보조기구구입 등) 800만원 이내
	간병비	○ 1일 24간 10만원, 1인 1회 500만원 이내
그밖의 지원	돌봄비	○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아동, 범죄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의 자녀 - 최장 6개월이내(12개월 연장) 300만원 이내 (최대 900만원)
	상담	○ 전화·면접·출장방문 상담, 전문상담위원 연계
	법률	○ 형사절차 및 구조제도 등 안내, 법정동행, 법정모니터링
청소	○ 살인, 방화 등 범죄현장 청소 지원	
	기타	○ 피해자 직업훈련비, 피해가정 주거환경개선 지원

4 지원절차

접수 ⇨ 상담 ⇨ 지원여부검토 ⇨ 심의·결정 ⇨ 지원금지급

☎ 문의 : 033)241-1295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7. 세제감면 - 국세

납기연장 (개인+법인)

1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 제출, 통지를 정해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2항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이하생략)

2 지원사항

- 납부 기한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기한연장 : 9월의 기간까지 가능

납부고지의 유예 (개인+법인)

1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 납세자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지원사항

-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연장 또는 유예 기간 문서 통지)

가산세의 감면

1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음

2 지원사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재해손실세액 공제

1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58조(개인), 법인세법 제58조(법인)
 - 사업자(내국법인)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

2 지원사항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법인세) 공제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3 신청기한

-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소득(법인)세 : 그 신고기한 내
 -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법인)세 :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1 법적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재해손실 공제)
 - 상속신고기한(사망 후 6월)내에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2 지원사항

- 재해손실가액에 따른 상속세가액의 공제

8. 세제감면 - 지방세

지방세 감면

①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가능

② 지원사항

- 모든 지방세 감면(감면을 따로 없음)
 - ※ 전소, 반소, 부분소 여부 관계없이 건물 사용 여부에 따라 감면유무 결정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①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 ②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
 - ③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면제**

9. 화재증명원, 제조물책임(PL)법

① 화재증명원 발급

- 법적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
- 용도 :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활용
- 발급부서 : 권역별 광역화재조사, 소방서 현장대응과, 119안전센터
- 발급대상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 처리기한 : 화재증명원 - 즉 시
사후조사 의뢰서 - 3일

② 제조물책임(PL)법

- 법적근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 결함의 개념
 - ① 제조상의 결함 :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설계상의 결함 : 설계 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
 - ③ 표시상의 결함 :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지시 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④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IV 시·군별 지원사항

1. [춘천] 긴급복지 지원제도(춘천시 복지정책과)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

- * 1.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 2. 공공요금(전기·가스·상하수도·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3. 질병·사고로 의료비,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 4. 복지사각지대(중앙, 지자체)발굴 대상자인 경우 등

2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월소득 4인기준 585만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원/월)	2,193,000	3,706,000	4,781,000	5,852,000	6,909,000	7,954,000	8,997,000

○ 재 산 : 1억 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700만원 이하

3 지원사항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현물지원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만원(4인)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100만원 이내
	간병	○ 수술·입원 시 간병비 지원	100만원 이내
	난방	○ 겨울철 난방비	30만원 이내
	주거수리	○ 낡은 구옥, 보일러 수리 등 ※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100만원 이내 (연 1회)
	체납공과금	○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 체납된 공과금 ※ 2년 이내 중복불가	50만원 이내
	기타		

4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거래내역,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최근 6개월), 임대차계약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문의 : 033)250-3098 (춘천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2. [원주, 횡성] 긴급복지 지원제도(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 지원대상

○ 방화 및 실화 범죄 피해자(원주시민 및 횡성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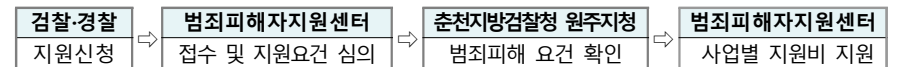
2 지원기준

○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지원사항

구분	지원내용	비고
구조금	피해자 사망 시	
상해구조금	피해자 장애 발생시	
긴급구호	센터 상근직원 또는 상담위원이 현장에서 상담 후 조치	
신변보호	보복범죄대비 위치추적장치 지급 절차 안내, 법정 동행·모니터링 및 수사기관 동행, 임시주거시설 알선 등	
주거지원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주거환경 개선	
치료비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등	
심리치료비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임상심리상담, 심리상담, 미술치료 등 전문가 치료비	
간병비 등	- 간병비 :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부대 비용 :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등	
생계비	피해로 인하여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장례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학자금지원	피해로 인하여 학업이 어려운 경우	
취업비지원	피해로 인하여 실직 후 취업이 어려운 경우	
법률지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법정 모니터링, 법정동행, 법률지원 위원 등 상담, 소송제기 등이 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지원 의뢰 등	
기타	기타 피해자 상담 후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기초 생활 수급자 책정, 시설입소 등)	

4 신청방법



☎ 문의 : 033)744-1295 (원주형성범죄피해지원센터)

3.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위기가정 도움사업(강원랜드 복지재단)

① 지원대상

- 폐광지역 4개 시군* 중위소득 120%이내 가구중 재난재해, 주거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 폐광지역 4개시군 :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②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③ 지원사항

- 최대 500만원(재난재해 1,000만원) 이내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단, 가구당 연 1회 제한

④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

⑤ 그 외 지원사항

- 주거환경개선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수리가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수리(단열, 난방, 위생설비 등) 및 그린에너지(태양열, 태양광)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 선정심사 : 서류심사, 현장조사, 선정심사를 통한 선정
 - 추진일정 : 접수(2, 6월), 선정심사(3, 7월), 시공(5~11월)
 - 관련문의 : 033-590-5904 김대환

☎ 문의 : 033)590-5914 (강원랜드 복지재단)

4. [삼척]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사업(삼척시 복지정책과)

①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1.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독거노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저소득 장애인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

②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00%(월소득 4인기준 5,757만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원/월)	1,828,000	3,088,000	3,984,000	4,876,000	5,757,000	6,629,000	7,497,000

-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700만원 이하

③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긴급 지원비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인가구 : 300천원 ○ 2인이상 가구 : 500천원	2년내 1회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등 본인부담 진료비	○ 300만원 이내	2년내 1회
	간병비	5일이상 입원 시 간병비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고등학생 중 납입고지 금액	○ 3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	초·중·고 재학생의 수학여행비	○ 초등(10만원), 중등(20만원) 고등(30만원)	
공공 요금	공공요금	3개월이상 체납자로 단전·단가스·단수 시	○ 30만원 이내 체납고지 금액	2년내 1회
월동 난방비	난방비	동절기(12월~2월)내 주택 난방비	○ 30만원 이내	2년내 1회

④ 신청방법(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033-570-3346 (삼척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계)

5. [삼척] 틈새복지 지원사업(삼척시 복지정책과)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 재 원 : 행복삼척 나누미* 모금액
 - * 행복삼척나누미모금 운동 :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삼척 실현을 위한 시민 서로 돕기 운동

2 지원기준

-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서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00%(월소득 4인기준 5,757만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원/월)	1,828,000	3,088,000	3,984,000	4,876,000	5,757,000	6,629,000	7,497,000

3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인가구 : 40만원 ○ 4인이상 가구 : 100만원	1년내 1회
의료비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본인부담 진료비	○ 100만원 이내	
응급환자 이송비	응급차량 이용금액		
재난가구지원	복구비		
난방비지원	난방연료 및 전기가스요금지원		
집수리지원	집수리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033-570-3346 [삼척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계]

6. [횡성] 외로움정책 희망복지 사업(횡성군 행복나눔복지과)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 사망, 행불, 질병, 실직, 부상, 폭력, 화재, 재해, 휴폐업, 노숙, 자살위험군 등

2 지원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01백만원 이하, 금융 : 500만원 이하

3 지원사항

- 생계비(45만원~), 의료비(300만원), 해산(70만원), 장제(80만원), 연료비(9.8만원), 전기(50만원), 교육비(초중고 최장2회), 주거지원(18만원~), 시설이용지원(53만원~)
- 지원기간 : 3개월 + 추가 3개월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5 그 외 지원기관

구 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 고
우체국 사각지대	중위소득 80%	생계비(중위소득 65%이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200만원 이하	
행복봉사 공동체성금	중위소득 95%	주거비(100만원), 의료비(300만원), 집수리(500만원) 간병비(100만원), 건보료(100만원), 공공(50만원)	3개월 (추가3월)
횡성사랑 십시일반	차상위계층	월 10만원	
생활안정 지원	조건 無	난방, 건보료, 공공요금, 관리비, 간병비, 기타 50만원	1회
긴급 집수리사업	중위소득 85%	재료비(100만원), 업체선정(300만원)	최대 500만원

☎ 문의 : 033) 340-2131 [횡성군 행복나눔복지과 외로움정책계]

7. [철원] 희망기반 구축사업(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
 -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8.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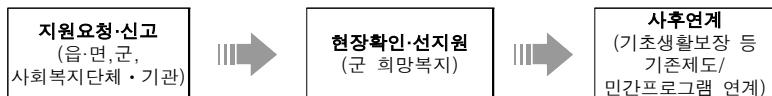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월소득 1인기준 219만원, 4인기준 585만원 이하)
- 재 산 : 1억 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3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 가구 생활 안정 지원	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1만원 (4인기준)	3회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및 입원비(간병비 포함) ○ 수술 후 요양재활병원 이송 시 치료비 지원 가능 ○ 치과치료비(틀니) 지원 가능 	15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회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로 거주 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 거소 확보 곤란 시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 되는 비용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18만원 (1~2인)	3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본인부담금(식비포함) 	50만원 이내(1인)	2회
	주거환경 개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 저소득층 집수리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 	200만원 이내	1회	

4 신청방법

- 철원군 희망복지지원단, 읍·면사무소,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사회복지 기관·단체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 문의 : 033)450-4086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8. [철원] 두루엘 천사지원사업(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1 지원대상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행복e음 6개월 이내 공적자료(소득재산정보자료)가 있는 대상자에 한함

2 지원기준

- 중위소득 140%이내 위기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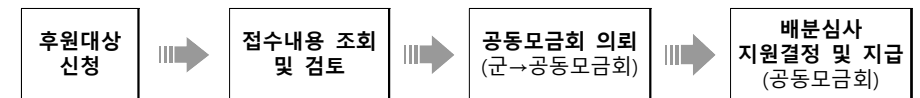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원/월)	2,558,963	4,323,311	5,577,530	6,826,806	8,060,322	9,280,044

- 재산기준 : 2억 이하
 - * 재산산정 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금 용 : 1,000만원 이하(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3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 가구 생활 안정 지원	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0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최대 300만원 이내	1회

4 신청방법



☎ 문의 : 033)450-4808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9. [화천] 긴급복지 지원제도(화천군 주민복지과)

1 지원대상

- 화재유형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화재가구
*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화재 및 자가 방화에 의한 화재는 제외

2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0% 이내(재산기준 : 없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3 지원사항

화재정도	전 소	반 소	부분소
지원금액	100만원	70만원	50만원

4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5 그 외 지원사항

- 화천군 긴급재난 솔루션 사업(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 442-1992)

관련기관	지원구분	지원내용	비고
사회복지협의회	현물	이동주택, 식자재(푸드뱅크) 좋은이웃들(50만원 이내)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금	화재지원금 (100만원 이내)	
화천군 새마을회	현물	김치, 반찬 등	
자원봉사센터	현물, 집수리	집수리, 보일러설치, 주거환경 정리	
화천경제인연합회	현금, 자재	화재지원 물품 등	
한국전력공사 화천지사	현물, 봉사	임시주택 및 복구주택 전기연결	
화천경찰서	안전관리	탄력순찰(심리안정)	
화천군보건의료원	건강	방문간호	
읍면사무소	현물, 집수리	사례관리사업(50만원 이내) 집수리(저소득/ 300만원 이내)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봉사	주거환경정리, 음식제공 등	

☎ 문의 : 033)440-2321 [화천군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양구] 긴급복지 지원제도(양구군 교육생활지원과)

1 지원대상

-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 1. 유기·방임·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지체·질환자
2. 질병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하나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
3. 주택화재로 인해 주거가 없어지거나, 단전·단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4. 창고, 하우스, 움막, 공원, 교각 부근, 여관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5.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생계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나 실제 부양
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6. 기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2 지원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1,024,204	1,743,916	2,256,020	2,768,122	3,280,224	3,792,326

- 재 산 : 1억 1만원 이하
- 금융재산 : 800만원 이하

3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	1인(441,900원), 2인(752,600원), 3인(973,800원) 4인(1,194,900원), 5인(1,415,900원), 6인(1,636,900원)	3개월간 지원
	의료	300만원의 범위 내 의료기관 통해 지원	1회
	주거환경 개선비용	100만원 이내 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등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지원	1회
	주택복구비	○ 반소, 반파일 경우 : 150만원 이내 ○ 전소, 전파일 경우 : 300만원 이내	1회
	특별구호비	화재,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시(고의,과실 제외) 300만원 지원	1회
	간병비	200만원이내지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1회
난방비	가구당 30만원 이내	1회	

☎ 문의 : 033)480-2376 [양구군 교육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11. [양양] 희망나눔운동 지원제도(양양군 복지과)

① 지원대상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②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③ 지원사항

- 화재복구비 100만원 이내

④ 신청방법

- 군청 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⑤ 기타사항

- 재원 : 양양군 전용 후원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 문의 : 033)670-2293 (양양군 복지과 희망복지부서)